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협상 동향과 시사점

박혜리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Tel: 3460-1029)



차 례 ●●●

1. 논의 배경
2. 중국의 GPA 가입협상 논의 경과 및 동향
3. 중국의 GPA 양허안 분석(1차/2차/3차)
4. 양허안 종합 분석 및 평가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2012년 7월 18일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위한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주요 회원국들은 중국의 양허안(3차 양허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음.
 - 중국이 올해 안에 4차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한바, 추가적인 요청사항 및 질의사항을 발굴하는 등 향후 개최될 가입협상을 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 중국은 2007년 GPA 가입협상을 개시한 이후 3차 양허안(2011년 11월)까지 제출한 상태이며, 협상 개시 당시 제출한 1차 양허안의 개방 수준과 비교한다면 많은 개선점이 있으나 여전히 여타 회원국의 개방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함.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중앙정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지방정부의 양허대상 포함, 공기업의 서비스 양허대상 포함 등임.
 -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1) 양허하한선 추가 인하, 2) 단계별 양허 확대안 기간 조정 또는 철회, 3) 협정 적용 배제 주석의 명확화 또는 삭제, 4)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 양허범위 확대, 5)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 양허범위 확대 등임.
- ▶ 향후 중국 GPA 가입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은 첫째, 여타 협상국과의 긴밀한 공조, 둘째, 다양한 협상카드 마련을 통해 중국 조달시장 개방 유도, 셋째, 협상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 관련 부처간의 사전협의 및 공조, 넷째, 한·중 FTA를 고려한 가입협상 전략 구상, 다섯째, 중국 정부조달 체계 및 규모에 관한 정보 파악 등임.

1. 논의 배경

- 2012년 7월 18일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위한 협상이 개최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은 중국의 양허안(3차 양허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음.
 - 중국이 올해 마지막 정부조달위원회 개최 이전에 4차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한바,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요청 사항 및 질의사항을 발굴하는 등 향후 개최될 가입협상(양자협의 포함)을 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WTO GPA 회원국들은 지난해 말까지 GPA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국들의 가입협상, 특히 중국의 GPA 가입협상에 주력하고 있음.
 - 중국의 GPA 가입은 국제 정부조달 논의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는데, 이는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의 정치·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조달 시장 개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정부조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중국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정부의 발표에 따르면¹⁾ 2011년 중국의 정부조달 규모는 1조 1,000억 위안(한화 약 184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10년 사이 10배 가까이 급증함.
 - 재정 지출에서 정부조달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0년 전 4.6%에서 2011년 11%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조달 부분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국은 기체결 FTA에서 정부조달 부문을 개방한 적이 없는바, 이번 GPA 가입협상 양허수준은 향후 한·중 FTA 정부조달 협상내용 및 개방수준의 척도가 될 것임.
 - 통상적으로 FTA 정부조달 챕터는 WTO GPA 협정내용을 준용하여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양허수준 또한 GPA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중국의 가입협상은 다자차원뿐 아니라 양자간 정부조달 논의에도 의미하는 바가 큼.

2. 중국의 GPA 가입협상 논의 경과 및 동향

- 중국의 GPA 가입협상은 2007년에 시작되어 올해까지 5년간 지속되어 왔음(표 1 참고).
 - 중국은 2007년 12월 가입협상을 개시하여 2008년 1월 1차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2010년 회원국들의 요청을 반영한 2차 양허안을 제출하였음.
 - 2012년 중국의 GPA 가입협상은 지난해 11월 30일에 제출된 3차 양허안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임.

1) Fuvic 중국 Daily; 중국경제금융센터(2012년 7월 4일자).

표 1.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

일자	내용
2007년 12월	중국 가입협상 개시
2008년 1월	중국 1차 양허안 제출
2008년 9월	회원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 중국은 요청목록(Checklist) 제출
2010년 7월	중국 2차 양허안 제출
2010년 12월	한국, 미국, 캐나다 등 회원국들이 양허요청서(Request)를 중국에 전달
2011년 9월	중국은 최초로 지방정부가 포함된 대표단 협상에 파견
2011년 11월	중국 3차 양허안 제출
2012년 7월	정부조달위원회 회의/한·중 양자협상
2012년 12월 이전	중국 4차 양허안 제출(예정)

자료: 저자 작성.

- 중국은 올해 12월경 개최될 예정인 WTO 정부조달위원회까지 4차 양허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GPA 회원국들은 그 전까지 중국에 대한 양허요청서(Request)를 전달할 예정임.

3. 중국의 GPA 양허안 분석(1차/2차/3차)

가. 1차 양허안²⁾의 주요 내용

- 조달 주체별 양허수준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양허하한선은 상품 50만SDR, 서비스 400만SDR, 건설 2억 SDR로 제시되었으며(표 2 참고), 양허기관은 50개 기관임.
 - 지방정부는 양허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공기업(국유기업)의 양허하한선은 상품 90만SDR, 서비스 미양허, 건설 3억SDR이며, 양허기관에는 14개 공기업이 포함됨.
 -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양허안에는 '조달상품 리스트'를 명시하여 일반장비, 사무실소비재, 건설 및 장식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조달만을 양허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표 2. 1차 양허안 양허하한선

(단위: SDR)

기관	상품	서비스	건설
중앙정부	50만	400만	2억
지방정부		미양허	
공기업	90만	미양허	3억

자료: WTO 중국 1차 양허안(GPA/ACC/CHN/1).

2) GPA/ACC/CHN/1.

표 3. 서비스, 건설서비스 양허 분야

코드		분야
서비스	C06	임대 및 리스 서비스(Rental and Leasing Services) C0604 Equipment and machinery
	C09	교육훈련(Training) C0902 Oversea training
건설서비스	B01	건축(Construction of building) B0101 Construction of office buildings B0102 Construc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자료: WTO 중국 1차 양허안(GPA/ACC/CHN/1).

- 분야별 양허범위를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은 임대 및 리스 서비스(Rental and Leasing Services)와 교육 훈련 서비스(Training) 두 분야만을 양허하였으며, 건설 부문에서도 사무소 건축(Construction of office buildings), 주거용 건축(Construc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두 분야만을 양허하였음(표 3 참고).
- 중국의 1차 양허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양허하한선은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낮은 개방수준)이며, 가입협상을 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수준임.

나. 2차 양허안³⁾의 주요 내용

- 중국은 2차 양허안(Revised Offer)에서 조달주체별 양허안을 제시하면서 이행경과 연차에 따라 차별적 양허하한선을 적용하는 단계별 양허확대안을 제안함(표 4 참고).
- 중앙정부의 양허하한선은 이행 5년차 기준으로 상품 20만SDR, 서비스 20만SDR, 건설서비스 1,500SDR로 제시되었으며, 양허기관은 총 61개 기관으로 1차에 비해 11개 기관이 증가함.

표 4. 2차 양허안 양허하한선

(단위: SDR)

조달 주체	기한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중앙정부	이행 1년차	50만	50만	1억
	이행 2년차			8,000만
	이행 3년차	40만	40만	5,000만
	이행 4년차	30만	30만	3,000만
	이행 5년차	20만	20만	1,500만
지방정부	미양허			
공기업	이행 1년차	90만	90만	2억
	이행 2년차			1억 8,000만
	이행 3년차	80만	80만	1억 5,000만
	이행 4년차	70만	70만	1억 3,000만
	이행 5년차	60만	60만	1억

자료: WTO 중국 2차 양허안(GPA/ACC/CHN/16).

3) GPA/ACC/CHN/16.

- 단 중앙정부 양허안 부속서(Note to Annex I)에 낙후지역의 중앙정부기관 사업소에 대한 예외, 양허제외 상품 목록이 있을 것이라는 예외조항⁴⁾을 둠.
 -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1차 양허안에 이어 전면 미양허하였음.
 - 공기업에 대한 양허하한선은 이행 5년차 기준 상품 60만SDR, 서비스 60만SDR, 건설 1억SDR이며, 양허 기관은 1차 양허안과 동일한 14개임.
 - 1차 양허안에서는 미양허 대상이었던 공기업 서비스 부문에 대한 양허하한선을 제시함으로써 공기업의 서비스 조달이 추가 양허됨.
- 분야별 양허범위를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 양허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건설 부문에 대한 양허안도 보다 구체화되어 제시됨(표 5 참고).
- 서비스와 건설서비스 양허안에 CPC 코드가 도입되면서 양허분야가 더욱 명확해짐.
 - 그러나 건설서비스 부문에서 정부조달의 핵심 분야인 토목건설(CPC 513)이 제외된 것은 건설서비스 조달 시장 개방이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은 향후에도 토목건설을 양허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임.⁵⁾

표 5.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 양허 분야

	CPC 코드	분야
서비스	8671	Architectural services
	83103	Rental or leasing services relating to ships (without operators)
	83104	Rental or leasing services relating to aircraft (without operators)
	83101+83102+83105	Rental or leasing services relating to other transport equipment (without operators)
	83106+83107+83108+83109	Rental or leasing services relating to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without operators)
	832(CPC 83202 not included)	Other (leasing or rental services concerning video tape not included)
	871	Advertising services
	865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633+8861+8862+8863+8864+8865+8866	Maintenance and repair of equipment
건설 서비스	511	Pre-erection work at construction sites
	512	Construction work for buildings
	514	Assembly and erection of prefabricated construction
	515	Special trade construction work
	516	Installation work
	517	Building completion and finishing work
	518	Renting services related to equipment for construction or demolition of buildings or civil engineering works, with operator

자료: WTO 중국 2차 양허안(GPA/ACC/CHN/16).

4) Notes to Annex 1, "As regards the above-mentioned central government entities, the supplies procured shall be classified as in the United Nations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but subject to the decis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XXIII. The supplies subject to exception of relevant entities will be specified in the revised offers in the future"

5) 중국의 경우 인프라 건설을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때문에 토목건설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 2차 양허안은 1차 양허안에 비해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높은(낮은 개방수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개선사항으로는 단계별 양허확대안 도입, 최종 양허하한선 하향 조정, 중앙정부기관 추가양허, 서비스 양허 시 CPC 코드 도입,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 명시하였던 조달상품 리스트 삭제⁶⁾ 등임.
- 추가개선 필요사항은 지방정부 양허대상 포함, 공기업 건설서비스에 대한 양허하한선 인하, 포괄적 양허 예외주석 삭제 등임.

다. 3차 양허안⁷⁾의 주요 내용

- 3차 양허안(Second Revised offer) 기준 조달주체별 양허수준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경우 이행 5년차 기준으로 상품 20만SDR, 서비스 20만SDR, 건설 1,500SDR이 제시되었으며, 양허기관은 총 61개로 2차 양허안과 동일함(표 6 참고).
- 지방정부는 3차 양허안에서 최초로 개방하였으며 이행 5년차 기준으로 상품 40만SDR, 서비스 40만SDR, 건설 3,000만SDR이며, 베이징 · 텐진 · 상해 3개 특별시와 장쑤성 · 저장성 2개 성이 개방됨.
- 공기업에 대한 양허수준 및 양허기관은 2차 양허안과 동일함.

표 6. 3차 양허안 양허하한선

(단위: SDR)

	기한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중앙정부	이행 1년차	50만	50만	8,000만
	이행 2년차			
	이행 3년차	40만	40만	5,000만
	이행 4년차	30만	30만	3,000만
	이행 5년차	20만	20만	1,500만
지방정부	이행 1년차	75만	75만	1억5,000만
	이행 2년차			1억
	이행 3년차	60만	60만	8,000만
	이행 4년차	50만	50만	5,000만
	이행 5년차	40만	40만	3,000만
공기업	이행 1년차	90만	90만	2억
	이행 2년차			1억 8,000만
	이행 3년차	80만	80만	1억 5,000만
	이행 4년차	70만	70만	1억 3,000만
	이행 5년차	60만	60만	1억

자료: WTO 중국 3차 양허안(GPA/ACC/CHN/30).

-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 양허범위는 확대되고, 건설 부문은 2차 양허안 수준과 동일함(표 7 참고).
- 서비스 부문에 새로 추가된 양허 분야는 소음감소(CPC 9405)와 화물운송(CPC 7123)임.

6) 일반장비, 사무실 소비재, 건설 및 장식재만 개방한다는 조달상품 리스트를 삭제하였고 향후 수정 양허안에서 주석을 통해 예외상품 목록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명시함.

7) GPA/ACC/CHN/30.

표 7. 서비스 추가 양허 분야

CPC 코드	분야
9405	Noise abatement services
7123	Freight transportation

자료: WTO 중국 3차 양허안(GPA/ACC/CHN/30).

- 3차 양허안은 2차 양허안과 비교하여 중앙정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이행 1~3년차), 지방정부 양허 개시, 서비스 부문 양허 분야 확대 등의 개선이 있었음.
 - 지방정부가 최초로 양허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양허기관 수가 5개 성에 불과하고, 협정 배제주석을 도입하는 등 제한적인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짐.
 - o 중국 지방정부 양허에 대해 대부분의 협상 참여국들은 22개 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등 지방기관 전체와 해당 하부기관에 대한 양허를 요구하고 있는바, 현재의 양허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함.
 - o 주요 지역경제 및 사회정책 추구를 위해서는 협정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의 협정 배제주석⁸⁾이 포함되어 있음.
 - 일부 서비스 부문이 추가 양허되긴 하였으나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임.

3. 양허안 종합 분석 및 평가

가. 주요 개선내용

- 중국이 2007년 가입협상 개시 당시 처음 제시한 양허안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가입협상을 통해 개선된 양허수준을 살펴보면 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표 8 참고).
 - 특히 중앙정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지방정부의 양허대상 포함, 공기업의 서비스가 양허대상에 포함된 점이 가장 큰 개선점임.

표 8. 양허하한선 및 양허범위 개 내용(1~3차 양허안)

(단위: SDR)

조달 주체	기관수	조달 대상		
		상품	서비스	건설
중앙정부	50개 → 61개	50만 → 20만	400만 → 20만	2억 → 1,500만
지방정부	미양허 → 5개 성에 소속된 지방정부	미양허 → 40만	미양허 → 40만	미양허 → 3,000만
공기업	14개 → 14개	90만 → 60만	미양허 → 60만	3억 → 1억

자료: 저자 작성.

8) Note to Annex 2, Para. 4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programs in pursuit of important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which will be specified in the revised offer in the future."

- 중국이 주요 회원국의 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이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최초의 개방수준이 매우 낮았고 기존 회원국의 개방수준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GPA에 따른 각국의 양허하한선과 비교해보면 중국의 양허하한선은 평균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표 9. WTO 정부조달협정 주요국의 양허하한선(시장개방 기준)

(단위: 만SDR)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상품	서비스	건설	상품	서비스	건설	상품	서비스	건설
한국	13	13	500	20	20	1500	45	-	1500
미국	13	13	500	35.5	35.5	500	40	40	500
캐나다	13	13	500	35.5	35.5	500	35.5	35.5	500
EU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일본	13	13	450	20	20	1500	13	13	1500
홍콩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싱가포르	13	13	500	-	-	-	40	40	500
스위스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이스라엘	13	13	850	20	25	850	35.5	35.5	850

주: 싱가포르의 지방정부가 없음.

자료: WTO.

- 양허하한선 조정 내용을 포함한 양허내용 전반에 대한 양허개선 내용 및 추가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결과는 [표 10]과 같음.

표 10. 1차/2차/3차 주요 개선사항 및 개선 요구

구분	1차 양허안	2차 양허안	3차 양허안
주요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공기업 양허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양허확대안 도입 ◦ 중앙정부 추가양허(11개 기관 추가) ◦ 서비스, 건설서비스 양허리스트에 CPC 코드 도입 ◦ 조달상품 리스트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 지방정부 양허 개시 ◦ 서비스 부문 양허범위 확대(2개 분야 추가)
개선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양허 개시 ◦ 서비스, 건설서비스 양허 분야 리스트에 CPC 코드 도입 ◦ 조달상품 리스트 삭제 등 예외품목에 대한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양허대상 포함 ◦ 공기업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 포괄적 양허 예외주석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양허 확대 ◦ 단계별 양허확대안 철회 ◦ 부속서 및 일반 주석에 불필요한 협정 배제주석 삭제 ◦ 서비스, 건설서비스 양허범위 확대

자료: 저자 작성.

나. 추가 개선 필요사항

1) 양허하한선의 추가 인하

- 중국 정부조달시장의 상품 및 서비스,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은 여전히 여타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양허하한선 인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할 것임.
- 중국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조달협정 이행 5년 후 최종 양허안이 중앙정부 20만SDR, 지방정부 40만SDR, 공기업 60만SDR로 여타 회원국들이 각각 13만SDR, 20만SDR, 40만SDR인 것에 비해 훨씬 높음.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13만SDR, 지방정부 20만SDR(기초자치단체 40만SDR), 공기업 40만SDR임.
- 건설서비스에 대한 양허안은 중앙정부 1,500만SDR, 지방정부 3,000만SDR, 공기업 1억SDR로 여타 회원국의 500만SDR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500만SDR, 지방정부 · 공기업 1,500만SDR로 건설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양허하한선이 높은(개방수준이 낮은) 편임.

2) 단계별 양허확대안의 기간 조정 및 폐지

- 중국은 2차 양허안부터 양허수준을 단계별로 이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제안하고 있는데 이행기간을 단축하거나 단계별 양허확대안 철회를 요구해야 함.
- GPA 가입 후 5년 이후부터 양허안에 따른 개방이 이루어지고, 이 또한 5년에 걸쳐 양허하한선이 단계별로 적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최종 양허하한선이 적용되는 시점은 GPA 가입 후 10년이 되는 것임.

3) 협정 적용 배제주석의 명확화와 삭제

- 중국의 양허안에는 포괄적인 예외조치가 다수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 규정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WTO GPA 협정문에 의해 이미 보장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함.
- 일반주석(General Notes)에 언급된 협정배제 규정⁹⁾으로는 1) 국가안보, 국가기밀 등에 관한 조달, 2) 소수민족 및 극빈지역의 개발을 위한 조달, 3) 중요 국가정책 목표를 저해하는 조달, 4) 주요 지역경제 및 사회정책 추구를 위한 조달 등을 규정하고 있음.

4)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 부문의 양허범위 확대

9) 협정배제 규정에 대한 상세 조항 및 문구는 현재 가입협상이 완료되지 않은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본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음.

- 중국은 서비스 부문의 양허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기·에너지·교통·통신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조달을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¹⁰⁾ 이에 대한 추가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건설서비스 부문에서는 정부조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건설(CPC 513)이 누락되어 있어 일부 토목건설 분야만이라도 양허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최근 개정된 GPA 개정안에서는 BOT를 정부조달 대상으로 명시하기로 한바, 중국 측에도 이러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요구해야 함.

5) 지방정부 및 공기업 양허범위(양허기관) 확대

- 지방기관의 양허확대(기양허한 5개 성 이외 다른 성의 양허대상 포함, 양허된 성의 하부기관들에 대한 양허대상 포함), 국영기업 양허대상 포함 등을 요구해야 함.
- 중국은 3차 양허안에서 베이징을 제외한 다른 성들의 하부기관을 양허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하부기관들이 양허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특히 중국은 조달시장의 90% 이상을 지방기관이 차지하고 있으므로(표 11 참고), 지방기관의 양허범위 설정에 따라 실질적인 조달시장 개방수준이 결정되므로 지방정부의 포함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공기업 양허대상에도 사실상 중국의 많은 국영기업들이 제외되어 있는바, 이들 기관도 양허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표 11. 중국의 구매주체별 정부조달 규모(2010년 기준)

(단위: 10억 위엔, %)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총계
상품	30.82	286.81	317.63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17.59	436.07	453.66
기타 서비스	8.28	62.63	70.91
소계	56.69	785.51	842.2
조달 주체별 비중	6.7	93.3	

자료: WTO 2012 Trade Policy Review : China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은 올해 안에 회원국들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4차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단시일 내 다른 회원국 수준의 양허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정부조달 관련 법제가 미비하고, 각 지방 조달제도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지역별 발전수준에 차이가 있어 내부적인 합의 도출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10) General Notes 2.4 "Procurement made by entities in Annexes 1 to 3 in connection with activities in the field of drinking water, electricity, energy,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s or postal services."

- 특히 중국의 국영기업 포함 문제는 회원국들의 관심 및 요구수준과 중국정부의 입장¹¹⁾ 간 간극이 크고 국영기업의 인정기준 · 표준 등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협상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GPA 가입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어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2013년 중에는 상당한 진척이 예상되는바, 우리나라는 철저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첫째, 중국에 대한 추가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는 양자간 협상차원에서 힘든 작업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수세인 분야도 있는바, 여타 협상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한 협상전략을 구상해야 함.

- 둘째, 현재 가입협상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이 중국에 대해 요구하는 수준은 중국의 현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수준인바, 향후 협상 후반으로 가면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다양한 협상카드를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중국의 조달시장 개방을 유도해야 함.

- 셋째, 정부조달 부문은 그 성격상 서비스(인력이동, 라이선스), 투자, 자격 인증(환경 및 기술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정 및 절차와 연계되어 있는바, 협상 결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협상 후 후속조치의 원활화(협상 이후 국내법 개정여부 등)를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고려하여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넷째,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중국은 과거 체결한 FTA에서 조달시장을 양허한 적이 없으므로 이번 중국의 GPA 가입협상이 향후 중국이 체결하는 FTA에서 조달협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 현재 GPA 가입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FTA 정부조달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유인이 없으며 실제로도 한 · 중 FTA에서 중국은 정부조달 부문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통상적으로 FTA에서 정부조달 챕터는 GPA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되며 양허수준 또한 회원국이 GPA에 제출한 양허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정부조달 부문은 WTO 차원에서 유리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여타 회원국과의 공조를 통한 압력행사가 가능하며, 양국간 협상 마찰을 피하면서도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임).

- 다섯째, 향후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조달 체계 및 기관에 대한 정보 파악을 위해 양자간 채널¹²⁾을 통한 정보요청 및 질의응답, 통계자료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강조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 및 소속기관, 국영기업의 범위 등은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 이들 기관의 실제 및 기능 파악, 조달규모 등에 대한 정보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KIEP**

11) 대부분의 중국 국영기업이 시장에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바, 조달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임.

12) 가입협상 시 필요할 경우 비공식적으로 개최되는 양자협의(Bilateral Meetings).